2019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

Ⅰ. 추진개요

○ 우리 청 시행 공익사업의 **2019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***을 **마련**하여 **효율적인 보상업무**를 **수행**하고자 함

*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·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 반영('19.05.03.발표)

Ⅱ. 집행기준

○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**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**을 곱하여 **농업손실 보상액**을 산정함

구 분	'19년도 농업손실 보상액(원)	직전 3년간 농작물 총수입(원/㎡)				비 고
		평균	2018년	2017년	2016년	
경기도 (서울·인천)	3,356	1,678	1,820	1,301	1,913	'18년(3,262원) 대비 94원 상승

* 농업손실 보상액 = 직전 3년간 농작물 총수입 평균 × 2년분

ⅰ)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<u>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</u>

ⅱ) 직전 3년간 농작물 총수입(원/㎡)

- (2018년분) 1,820원 = 농작물 수입(20,015,000원) ÷ 경지면적(10,992㎡)
- (2017년분) 1,301원 = 농작물 수입(14,764,000원) ÷ 경지면적(11,340㎡)
- (2016년분) 1,913원 = 농작물 수입(16,280,000원) ÷ 경지면적(8,508㎡)

Ⅲ. 향후계획

○ 2019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방침결정 즉시 시행('19.5.~)

붙임 **분묘 보상액, 이사비 및 농업손실 보상액 연도별 산정현황**

(단위 : 원)

구 분	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증감 (전년대비)
유연분묘 보상액	단 장	3,280,000	3,310,000	3,390,000	3,470,000	3,610,000	140,000 (4.0%)
	합 장	4,160,000	4,210,000	4,320,000	4,430,000	4,640,000	210,000 (4.7%)
	삼합장	4,860,000	4,920,000	5,060,000	5,210,000	5,470,000	260,000 (5.0%)
	아 장	2,220,000	2,240,000	2,270,000	2,300,000	2,360,000	60,000 (2.6%)
무연분묘 보상액	단 장	1,000,000	1,010,000	1,060,000	1,090,000	1,160,000	70,000 (6.4%)
이사비	33㎡미만	647,930	654,360	634,660	623,820	684,570	60,750 (9.7%)
	33㎡이상~49.5㎡미만	1,093,900	1,091,750	1,033,280	995,060	1,080,660	85,600 (8.6%)
	49.5㎡이상~66㎡미만	1,367,380	1,364,690	1,291,610	1,243,830	1,350,830	107,000 (8.6%)
	66㎡이상~99㎡미만	1,640,850	1,637,630	1,549,930	1,492,600	1,620,990	128,390 (8.6%)
	99㎡이상	2,187,810	2,183,500	2,066,570	1,990,130	2,161,320	171,190 (8.6%)
농업손실 보상액	㎡당	3,540	3,604	3,746	3,262	3,356	94 (2.9%)